

서울에너지공사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의안 번호	2447
----------	------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지난해부터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공모펀드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약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나. 이를 위해 '18.1월 시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발전소 운영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발전사업 허가, 발전소 실시 설계 등을 진행 중에 있음
- 다. 동 사업은 시민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특성상 사업시행법인의 신뢰성이 요구되며, 시민투자금의 안전한 상환과 발전소 장기 운영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 라. 이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의거 서울에너지공사의 “시민 햇빛발전소 주식회사” 현금출자를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1) 공공시설 활용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계획 수립 : '17. 8.30

- 2) 과천시 의회 및 과천시 부시장 사업설명회 : '17. 9.26
- 3)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SPC설립계획 수립 : '17.10.24
- 4) 참여사간 양해각서 체결 : '17.11.16
- 5) SPC(시민햇빛발전소(주)) 설립 및 법인등기 : '18.1.2
 - 발전사업 허가신청 등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OCI(주)에서 출자 등기
- 6)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 '18.2.12

나. 출자개요

1) 출자대상 기관

가) 기관명칭 : 시민햇빛발전소 주식회사

나) 출자금액 : 990백만 원(지분율 : SPC 출자금의 약 62.7%)

2) 주요사업

가) 대표자 선임, 주주총회 개최 등 시민햇빛발전소(주) 운영

나) 시민펀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다) 전력판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수익금 적립 및 관리

3) 출자 필요성

가) 시민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시행법인의 신뢰성 요구

나) 공동 출자를 통한 위험 분산 및 재무영향 최소화

다) 시민투자금의 안전한 상환 및 발전소 장기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발전소 운영주체 필요

4) 취득되는 권리와 출자에 따른 반대급부

가) 출자지분에 따라 시민햇빛발전소(주)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주식

나) 시민햇빛발전소(주)의 매기 운영수익에 대해 배당수익 수취

다) 운영종료 후 시민햇빛발전소(주)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각이익 또는 개발이익에 대해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수익 수취

5) 취득되는 권리의 처분계획

가)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종료 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청산

나)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자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3)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 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4.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
6.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 관련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9. 제1호부터 제8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공공시설 활용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계획 수립 : 서울시 방침
-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 사장 방침

※ 작성자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팀장 최철웅 ☎ 2133-3523 / 담당 김수정 ☎ 2133-3519)

서울에너지공사 햇빛발전부

(부장 조창우 ☎ 2640-5320 / 담당 정규창 ☎ 2640-5322)